

보험의 이해 (V)

공동집필 · 박해준 고문 A&Z 경영컨설팅(주)
정보영 이사 물류신문사
감 수 ·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 목 차 >

1. 보험
2. 약관
3. 보험계약
4.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5. 보험증권
6. 고지 의무
7. 손해보험
8. 초과보험
9. 중복보험
10. 일부보험
11. 화재보험
12. 운송보험
13. 해상보험
14. 적하보험
15. 책임보험
16. 자동차보험
17. 인보험
18. 생명보험
19. 상해보험
20. 상호보험
21. 자기보험
22. 희망이익보험

18. 생명보험(生命保險)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과는 달라서 보험사고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가 아닌가, 또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가는 일체 관계없이 약정된 일정한 보험금액이 지급되는 점이 생명보험의 특징이다. 생명보험을 손해보험과 비교하여 정액보험(定額保險)이라고 한다.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금액 이외에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기 때문에 초과·중복·일부보험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관계에서 보험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 예컨대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계약초년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4분의 1, 2년 이내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생명보험은 그 보험사고의 종류에 따라 사망보험, 생존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과의 혼합보험인 이른바 양노보험으로 분류된다. 또 계약자가 자기의 생명에 보험을 붙이는 「자기의 생명보험」과 타인의 생명에 보험을 붙이는 「타인의 생명보험」이 있다. 그런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생명으로 도박을 하여 그의 사망을 기대하는 폐해가 생기므로 생명보험은 1991. 12. 31 개정 상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에는 일정기간내에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사망보험이 있다. 이외에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종신에 걸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사망보험에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대하여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며 타인의 생존을 기대하여도 폐해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또 기타의 제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순수한 생존보험은 이용되고 있지 않다. 양로보험(養老保險)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하여도 또는 그 사이에 사망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혼합보험(混合保險)이다. 즉 혼합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생존과 사망의 보험이 혼합된(mixed) 보험이다.

[註] 정액보험 :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계약상 정해진 금액의 전액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 따위로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과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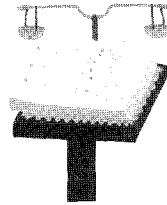
19. 상해보험(傷害保險)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給與)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 상법상 손해보험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생명보험과 같이 반드시 정액보험에 한하는 것도 아니

다. 즉 상해보험에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순수한 정액보험이 있다. 그리고 상해의 양태나 정도에 따라 보험금액의 액수를 정하는 일종의 부정액보험인 경우도 있다. 또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와 비용, 예를 들면 치료비나 약품대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다.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외부적 혹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의 손상을 말한다. 따라서 중독, 마취, 일사, 열병 또는 정신적인 충동으로 인한 신체의 상해는 여기서 말하는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의 책임을 진다. 여기서 기타의 급여라 함은, 치료 또는 의약품의 급여와 같이 현금 이외의 급여를 말한다. 또 보험자는 생명보험과 같이 사망의 경우 보험금액을 일시금 또는 질병과 같이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닌 때 이를테면 타인의 신체에 관한 보험에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대신에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이것은 예컨대 공장의 근로자 또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같이 일정한 직무 또는 직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그 직위에 있는 특정인의 교체를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고발생이 누구이든 그 직무 또는 직위에 있는 자에게 있으면 보험자의 책임을 생기게 하는 계



약을 체결할 경우를 예상한 것이다.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무효를 규정한 상법 제73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보험은 순수한 정액보험의 경우도 있으나,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보험에 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20. 상호보험(相互保險)

보험을 필요로 하는 다수자가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보험자로 되어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을 하고 수지의 차액을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분배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보험자가 수지의 차액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을 영리보험(營利保險)이라고 한다.

상호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대로 단체(사단)의 구성원(사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단관계라고 한다. 이 사단관계는 법적 형식면은 영리보험의 계약관계와 다르지만, 상호보험의 가입자는 사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식이 적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별로 다른 점이 없다.

이 밖에 보험기술상에 있어서도 많은 유사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호보험에 관한 법규제는 시정상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호보험에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영리보험에 관한 법규를 준용하게 되어 있다. 또 현재에 있어서는 보험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21. 자가보험(自家保險)

자기 보험이라고도 한다. 다수의 선박을 소유하는 해상운송회사나 각지에 다수의 공장이나 창고 혹은 작업장 등을 가지는 기업이 해난 혹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입은 우연한 재산의 손해를 전보(填補)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그 재산의 멸실(滅失)의 위험을 측정하여 일정비율의 금전을 적립하는 제도이다. 손해발생의 개연율(蓋然率)을 기초로 하여 적립을 하는 점에 있어서 단순한 저축 또는 준비재산과는 다르다. 또한 다수인이 집합하여 위험을 분담한다고 하는 요소가 없는 점에 있어서는 보험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부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일부만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 나머지는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자가보험이라는 말을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본래의 뜻은 아니다.

22. 희망이익보험(希望利益保險)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 여기서 이익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증가된 가액이고 보수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 등이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수이다. 이 보험은 주로 해상보험에서 이용되며, 육상운송보험에 있어서도 당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용된다. 육상보험운송에 있어서의 희망이익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산입한다. 또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희망이익보험은 실제에 있어서는 적하보험에 부수(附隨)하여 적하(積荷)의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그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 상례이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취하여 당사간의 협정이 없으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